

제4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하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4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9년 3월 22일 (금) 오전 8시 3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2길 25
연합뉴스빌딩 17층 연우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 고 사 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 의 사 항
제 1 호 의안 :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 참조)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별첨 참조)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별첨 참조)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사항'을 금융감독원 및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회 당일 참석하실 때에는 동봉한 참석장에 기명날인하여 접수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별첨.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9년 2월 21일

현대종합상사(주) 대표이사 정 몽 혁 (직인생략)

- ※ 주주총회 행사장 교통안내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⑥번 출구 500m 전방 서울지방국세청 옆
5호선 광화문역 ②번 출구 600m 전방
1호선 종각역 ②번 출구 700m 전방
- ※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별첨)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①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변경)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관련 근거 신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 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제10조 (명의개서대리인)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변경)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관련 근거 신설
제11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0 조의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삭 제>	(삭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관련 내용 삭제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 월 1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③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1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 월 1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③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일정한 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관련 내용 변경 (변경)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
제13조 (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 ② 정기 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 통지 및 공고) ② 정기 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변경)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
<신 설>	제24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사외이사 사임·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 시, 상법상 예외규정 적용 근거 신설
제24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제24조의 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변경) 개정 외감법상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 변경 반영
제 29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29 조의 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변경) 개정 외감법상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 변경 반영
<신 설>	제 35 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부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신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관련 근거 신설
<신 설>	부 칙(2019.03.22)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 43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35조 개정 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전자증권법 관련 규정 시행시기 별도 규정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약 력	추 천 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사내이사	정 몽 혁	1961.07.29	3년	(現) 현대종합상사 회장	이 사 회	계열회사 임원	해당사항 없음
사내이사	김 원 갑	1952.10.25	2년	(現) 현대종합상사 부회장	이 사 회	계열회사 임원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최 관	1957.12.06	2년	(現)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이 사 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약 력	추 천 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사외이사	최 관	1957.12.06	2년	(現)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	이 사 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